

수원지방법원 2022. 7. 7 선고 2021나68742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A

피고, 항소인 수원시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

담당변호사 박선영

변 론 종 결 2022. 6. 16.

판 결 선 고 2022. 7. 7.

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. 4. 8. 선고 2020가소9183 판결

주 문

1.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4,072,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. 4. 17.부터 2022. 7. 7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.
3. 소송 총비용 중 80%는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22,468,9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1989. 4. 5.경 수원시 팔달구 B 대 247㎡(이하 ‘이 사건 토지’라고 한다) 및 그 지상 2층 주택(이하 ‘이 사건 주택’이라고 한다)을 매수하여 같은 달 19.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나. 이 사건 주택은 1978. 12. 14.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C에 의하여 신축되었는데,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ㄴ, ㄷ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63㎡(이하 ‘이 사건 도로 부분’이라고 한다)는 위 신축 이전인 1975. 2.경부터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로 고시되어 있어서 C은 위 토지 중 이 사건 도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만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였다.

다. 이 사건 도로 부분은 이 사건 주택 신축 무렵 피고에 의하여 아스팔트로 포장되었고, 현재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하여 수원시 팔달구 D 부근을 지나는 왕복 2차로의 도로와 이 사건 토지 안쪽에 조성된 주택가 등을 연결하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을 제1 내지 6호증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

가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2015. 1. 1.부터 2019. 12. 31.까지 이 사건 도로 부분을 점유·사용하면서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 부분의 점유·사용으로 인한

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1) 점유 · 관리의 종료

피고는 수원시 고시 E(2009. 5. 14.)호의 F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라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도로 부분을 점유 ·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,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도로 부분에 대한 사실상의 점유 및 관리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2) 배타적 사용 · 수익권 포기

피고는,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던 C이 건축허가를 얻기 위하여 스스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도로 부분을 도로로 제공하였고, 원고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도로로 계속 사용되도록 하였으므로 배타적 사용 · 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. 그러나 C은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면서 이 사건 도로 부분에 도로예정지의 지정고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사용 · 수익의 제한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를 건축 부지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, 이 사건 도로 부분은 그 면적이 63㎡로 전체 토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5%나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C 및 그를 승계한 원고가 이 사건 도로 부분의 사용 ·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.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3) 소멸시효

피고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일부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.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고, 2020 4. 6.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,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2015. 1. 1.부터 2015. 4. 5.까지 부분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.

3. 부당이득반환의 범위

원고는, 이 사건 도로 부분의 지목이 대지이므로 이를 기초로 산정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22,468,95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, 이 사건과 같이 사유지의 일부가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그

도시계획선에 맞추어 건축을 한 까닭으로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가 인근 주민의 통행로로 이용된 후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여 점유·관리하여 온 경우, 지방자치단체가 얻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은 사실상 도로로 제한받는 상태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므로(대법원 1999. 4. 27. 선고 98다56232 판결 등 참조), 위 부분이 도로로 제한받는 상태를 기초로 산정한 임료로 부당이득금을 산정한다.

감정인 G의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, 이 사건 도로 부분의 2015. 4. 6.부터 2019. 12. 31.까지의 임료(도로로 제한받은 상태를 기초로 산정)는 4,072,860원(= 2015. 1. 1.부터 2019. 12. 31.까지의 임료 합계 4,290,943원 - 2015. 1. 1.부터 2015. 4. 5.까지의 임료 218,083원)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4,072,8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0. 4. 17.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. 7. 7.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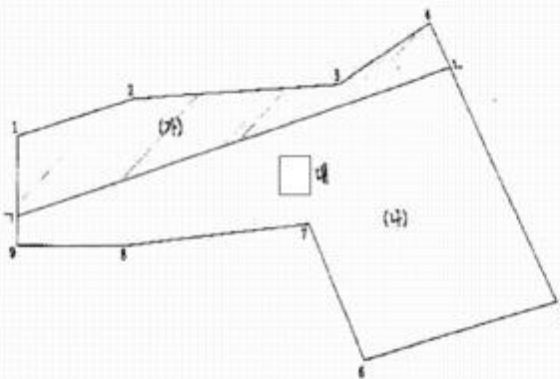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.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,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류창성, 판사 정희일, 판사 오연수

감 정 도

경기도 수원시 팔달구

지적도 제 8 호



범례	명칭
—	지적선
▨	현도면적지

지번	부호	면적	구분
(가)	1, 2, 3, 4, 2, 7, 1	63㎡	도로
(나)	7, 2, 5, 6, 7, 8, 9, 7	184㎡	대지

